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3. 8. 4.(금)

식약처, 영유아·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

- 영유아·어린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생산·수입 실적 상위 36곳 점검
- 안전성 자료의 작성·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 적발
- 영유아·어린이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도 안내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**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·광고하는 화장품**(이하 영유아·어린이 화장품)**을 유통·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**(생산·수입 실적 상위 36개 업체, 점유율 80%)를 **점검**한 **결과** 「화장품법」에 따른 **안전성 자료**의 **작성·보관 의무**를 **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**를 **적발**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**행정처분***을 **요청**했습니다.

* (1차 위반)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, (2차) 정지 3개월, (3차) 정지 6개월, (4차 이상) 정지 12개월

이번 점검은 '19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 도입된 **영유아·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**의 **준수 여부**를 **확인**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.

<화장품법>

제4조의2(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)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·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(이하 "제품별 안전성 자료"라 한다)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.

1.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
2.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
3. 제품의 효능·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

영유아·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는 화장품 **책임판매업자**가 ❶개발하려는 **화장품**이 **영유아·어린이**에게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, ❷판매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**영유아·어린이 화장품**의 **안전**을 **확보**하기 위해 **도입**한 **제도입니다.**

참고로 **영유아·어린이 화장품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**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아이들은 호기심으로 화장품을 먹는 경우가 있으므로, **아이들 손에 닿지 않은 곳에 화장품**을 **보관**하고 화장품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.

식약처에서는 **영유아·어린이**에서 **화장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**과 **영유아·어린이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**을 **고시***하고 있으니 **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사용**해야 합니다.

* 「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」,
「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」

예를 들어 **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**는 **적색 2호**(아마란트, Amaranth)와 **적색 102호**(뉴콕신, New Coccine) **색소**가 들어있는 **화장품**을 **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**

만약, **영유아·어린이 화장품 사용 후 피부가 빨갛게 되고 가렵거나 부어오르면 즉시 사용**을 **중단**하고 **병원**을 **방문**해 **의사**의 **진료**를 받아야 합니다.

식약처는 앞으로도 **영유아·어린이 화장품**을 **안심**하고 **사용**할 수 있도록 **지속적으로 점검·조치**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	책임자	과 장	고지훈 (043-719-3401)
		담당자	연구관	배창준 (043-719-3403)

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
10년 지켜온 국민안심, 100년 뒤에갈 안심기준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